

일반계정 전환특약(보유계약용) 약 관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목 차

제 1 관 목적.....	3
제 1 조 【목적】	3
제 2 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3
제 2 조 【특약의 적용】	3
제 3 조 【특약의 내용】	3
제 4 조 【특약의 보험료】	4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
제 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4
제 7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5
제 8 조 【해지환급금】	6
제 9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6
제 4 관 기타사항	6
제 10 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6

일반계정전환특약(보유계약용) 약관

제 1 관 목적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 조 【특약의 적용】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주가지수연계형' 펀드(주계약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중 펀드명에 '주가지수연계형'을 포함하는 펀드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로 투자하는 변액보험(다만, 상품명에 'ELS'를 포함하며 조기상환시기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변액보험에 한함)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부가된 전환특약 등을 통하여 변액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계약으로 전환된 주계약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 3 조 【특약의 내용】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 제 1 호에서 제 3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5 년이상 지난 계약
 2. 전환신청일의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 ② 제 1 항의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일부턴 공시이율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 2 항의 전환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하나로 선택

해야 합니다. 다만, 제 2 호는 계약자적립금이 '주가지수연계형' 펀드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환신청일+ 제 2 영업일

2. 전환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가지수연계형' 펀드의 조기 또는 만기 상환일+ 제 2 영업일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당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거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일반계정 전환신청을 취소하며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되어 운용될 수 없습니다.

제 4 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 의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에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중 '[사망보험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② 전환일 이후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전환일 이후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월전환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전환일부터 매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의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해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적용방법 예시】

공시일	2020.4.1	2020.5.1	2020.6.1	2020.7.1	2020.8.1	2020.9.1	...
공시 이율 (%)	2.0%	2.2%	2.3%	2.2%	2.3%	2.4%	...

(전환일)

○ 적립이율: 2020.4.15 2020.5.15 2020.6.15 2020.7.15 2020.8.15
 ← 2.0% → ← 2.2% → ← 2.3% → ← 2.2% → ← 2.4% →

※ 상기 예시에서 사용된 공시이율은 공시이율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각 시점에서의 실제 공시이율과는 다를 수 있으며, 미래의 공시이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 특약에서 「월전환해당일」이라 함은 전환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전환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전환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전환해당일로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체결 후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5% (일복리 0.004079%)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 (일복리 0.002726%)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해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으로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5%인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주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5%)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 7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전환일 이후의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8 조 【해지환급금】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전환일 이후의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9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전환일 이후의 계약자적립금 인출은 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 10 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약관 중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 및 특별계정과 관련된 내용은 준용하지 않습니다.